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교진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·운영 근거 마련 등 새로운 형태의 박사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·운영 근거(안 제22조의2 제1항 신설)

- 대학이 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

나. 산업전문박사과정의 교육과정 운영(안 제22조의2 제2항 신설)

-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, 산업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

다. 산업전문박사학위 수여 근거 및 표기(안 제22조의2 제3항 신설)

- 소정 과정 이수자 대상 산업전문박사학위 수여 근거 마련
- 산업전문박사과정을 통해 수여한 학위에 대해 산업전문박사임을 명시

라.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졸업요건 규정(안 제22조의2 제4항 신설)

- 학위 졸업요건으로 연구개발 성과물 제출 규정

마. 연구개발 성과물의 심사(안 제22조의2 제5항 신설)

- 연구개발 성과물 심사위원회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
- 심사절차 및 심사료 등에 대해 제44조제2항 및 제45조 준용

바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칙 위임(안 제22조의2 제6항 신설)

- 그 밖에 산업전문박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위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추진 예정

3) 행정규제 : 협의 예정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산업전문박사과정) ① 산업 현장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은 전문대학원에 전문학위과정으로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산업전문박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, 산업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산업전문박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산업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전문박사과정을 통해 수여한 학위는 산업전문박사임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④ 제4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업전문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논문 대신 연구개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물의 심사절차 및 심사료 등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심사위원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

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2조의2(산업전문박사과정) ①</u> <u>산업 현장의 기술혁신 및 연구</u> <u>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</u> <u>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은 전문</u> <u>대학원에 전문학위과정으로 산</u> <u>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·운영할</u> <u>수 있다.</u> <u>② 산업전문박사과정의 교육</u> <u>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, 산업</u> <u>현장에서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</u> <u>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산업전문박사과정에 입학하여</u> <u>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</u> <u>사람에게는 산업전문박사학위를</u> <u>수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전</u> <u>문박사과정을 통해 수여한 학위</u> <u>는 산업전문박사임을 명시하여</u> <u>야 한다.</u> <u>④ 제4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</u> <u>하고 산업전문박사학위를 취득</u> <u>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</u> <u>바에 따라 학위논문 대신 연구</u> <u>개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<u>⑤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</u>

물의 심사절차 및 심사료 등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심사위원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산학협력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258